

< 퇴직소득 >

1. 퇴직소득의 의미

근로자가 퇴직을 사유로 받는 퇴직금등과 일시금으로 받는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

2. 퇴직소득의 범위

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함

퇴직소득의 범위	
(1)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	
(2)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	
(3)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	
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	
②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	
③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	

3. 퇴직판정의 특례

구분	내용
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	<p>현실적인 퇴직을 판단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</p> <p>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</p> <p>② 합병·분할 등 조직변경, 사업양도 또는 직·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진출 또는 동일한 고용주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진 경우</p> <p>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</p>
퇴직소득 중간지급	<p>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(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, 이하 “퇴직소득중간지급”이라 함)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봄</p> <p>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②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→ 2016년부터 삭제</p> <p>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되는 경우</p>

4. 비과세 퇴직소득 : 비과세 근로소득과 동일(p327 참조)

5. 퇴직소득 수입시기

- 원칙 : 퇴직을 한 날
-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: 소득을 지급받는 날

6. 계산구조

- 2015.12.31.까지 퇴직하는 경우

	퇴직급여	…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되, 임원 퇴직소득의 경우 한도초과액*1은 근로소득으로 봄			
(-)	-	… 필요경비 인정 ×			
	퇴직소득금액				
(-)	퇴직소득공제	… ① 기본공제 : 퇴직급여 × 40% (::결집효과 완화)			
		② 근속연수공제*2(p331 참조)			
	과세표준	× 1/근속연수 × 5 × 기본세율 × 1/5 × 근속연수 =	산출세액*3		
			(-)외국납부세액공제*4		
			<u>결정세액</u>		

*1 임원퇴직소득의 경우 한도초과액

① 한도액

	한도액 =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	× 1 × 2012.01.01. 이후의 근무기간 월수	× 3		
	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	10	12		

②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

	근로소득 = (임원 퇴직소득금액 - 2011.12.31.에 퇴직하였다고) - 한도액			
		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			

*2 근속연수공제 관련 정리사항

- ① 한도 없이 해당금액을 공제하며, 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
- ②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(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)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함
- ③ 같은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하여 둘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 :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 합산 월수 - 중복기간 월수

*3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에 5의 환산배수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되, 2013.01.01.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.01.01. 이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

‘ 퇴직소득 과세표준 × 2012.12.31.까지의 근속연수 ’ 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
전체 근속연수

은 종전 규정에 따라 연분연승법을 적용함

$$\text{산출세액} = (\text{과세표준} \times 1/\text{근속연수}) \times \text{기본세율} \times \text{근속연수}$$

*4 외국납부세액공제

외국납부세액공제액 : min(①,②)

① 외국납부세액

② 한도 : 퇴직소득산출세액 \times $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금액}}{\text{퇴직소득금액}}$

7. 퇴직소득 과세방법

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.

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하고,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